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-277호

이 조례(안)는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
조례·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
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9년 5월 9일

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가.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조 제1항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실의 지정 시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되었으나,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아 규제완화의 혜택을 주민에게 제공할 수 없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12조(개방화장실 지정) 후단신설

-【변경전】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.

-【변경후】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「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 환경 수준 향상 및 이용편의 증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.

3. 의견제출

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청소행정과장, 전화 : 3396-5474, 팩스 : 3396-8756, email : ysw4426@junggu.seoul.kr, 주소 :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, 5층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
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**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
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**

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(개방화장실의 지정) ① 구청장은 법 제 9조에 따라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 환경 수준 향상 및 이용편의 증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</p>	<p>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</p>
<p>제12조(개방화장실의 지정)</p> <p>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.</p>	<p>제12조(개방화장실의 지정)</p> <p>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 환경 수준 향상 및 이용편의 증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.</p>